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경순	6601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김귀선	6503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김미전	6604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김수영	72112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김준현	94060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박경희	6408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박성규	861119-*****	충남 아산시 탕정면
박향희	7405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손세락	97040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손윤옥	59120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동준	951011-*****	제주도 제주시 연동
양수진	850117-*****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
양현대	891223-*****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이경태	9510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이영선	630209-*****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이은주	7302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이지은	970328-*****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이해숙	661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장동유	510525-*****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장미애	7906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조항순	570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원정희	67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남화철	790807-*****	부산광역시 사상구 패법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경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경순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귀선	●●●●지점 소속 모집인 김귀선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미전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김미전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김수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수영은 2020.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준현	●●지점 소속 모집인 김준현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4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경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경희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성규	●●●●●●지점 소속 모집인 박성규는 2020.10.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향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향희는 2019.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손세락	●●●지점 소속 모집인 손세락은 2019.5.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손윤옥	●●지점 소속 모집인 손윤옥은 2020.3.28. 타사(○○카드(주))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송동준	●●지점 소속 모집인 송동준은 2020.6.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양수진	●●지점 소속 모집인 양수진은 2020.6.9. 신용카드 연회비(3.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양현대	●●지점 소속 모집인 양현대는 2020.7.21. 신용카드 연회비(3.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경태	●●지점 소속 모집인 이경태는 2020.4.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영선	●●지점 소속 모집인 이영선은 2019.3.25. 타사(○○카드주)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은주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주는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지은	●●지점 소속 모집인 이지은은 2020.5.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이해숙	●●지점 소속 모집인 이해숙은 2019.9.3.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80만원
장동유	●●●지점 소속 모집인 장동유는 2019.4.12. 및 2019.4.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1인에게 총 2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장미애	●●●지점 소속 모집인 장미애는 2019.3.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조항순	●●지점 소속 모집인 조항순은 2018.7.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원정희	●●●●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원정희는 2018.3.2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남화철	●●●●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남화철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9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 나.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3.3.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